
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주요 개정사항

I.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

- ① (저소득자 소득판정기준) 통계청 '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' '22년 3/4분기 발표기준에 따라 '23년도 저소득자 기준을 개정
 -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서식 변경('22.7.1.)에 따라 소득금액증명 서식의 "지급받은 총액"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판단

- ② (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 범위 확대) 「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'결혼이민자'의 '자녀'를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으로서 취약계층에 추가
 - * 국조실 규제개선 과제(지자체 건의) 추진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 대상으로 추가

- ③ (인증취소 사유 명확화) 사실상 폐업, 도산 등의 경우 시정명령없이 바로 인증취소할 수 있도록 함
 - * (현재)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인증취소하도록 규정(지침)하여, 근로자가 없거나 사실상 폐업한 기업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하고 있음

- ④ (과태료 제도 개선) 시정명령을 미이행하거나 사실상 폐업이나 도산 등으로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사회적기업이 최종적으로 인증취소(인증반납 포함)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함
 - * (현재) 시정명령 후 경영악화로 사실상 폐업하여 인증반납하거나, 영업 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

II.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

- ① (지정신청 제한기간) 지정신청 탈락시 '탈락 다음 연도까지' 지정 신청을 제한토록 한 규정을 '탈락 후 1년간' 신청 제한

* (현재) 지정 탈락 시점에 따라 지정신청 제한기간이 1~2년으로 상이(국조실 제도 개선 과제)

② 고용노동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개편

- 고용노동부형 지정 유형을 '모든 유형으로 확대'하여 창의혁신적 기업의 사회적기업 진입 지원('22년 2차 지정부터 시범 적용)
- 창업육성기관이 고용노동부형으로 육성할 창업팀을 사전에 선정·육성하고, 고용노동부형 예비 신청시 추천하여 육성기관의 책임성 강화